

의안번호	2204986
의 퇴 인	천하람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8.
추 계 번호	24F498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외부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보수 세액 공제 도입

【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4조의2 신설 (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)	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감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감사보수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- 다만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을 추징 -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9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의2 신설 (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급한 감사보수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
-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, 해당 기업별로 지급하는 감사보수 금액, 법인세 납부실적 등의 자료가 필요함
- 그러나 중소기업별 회계감사 보수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며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-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2024.2. 발표한 「'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」에 따르면, 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 1,212사이며, 이 중 비상장회사가 3만 7,947사(92.1%)로 대부분을 차지

[표 1]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: 2023년말 기준

(단위: 사, %)

구 분	주식회사						유한회사 (비상장)	합 계
	주권상장				비상장			
	유가증권	코스닥	코넥스					
'23년	833	1,680	129	2,642	37,947	40,589	623	41,212
(비중)	(2.0)	(4.1)	(0.3)	(6.4)	(92.1)	(98.5)	(1.5)	(100.0)

자료: 「'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」, 금융감독원, 2024.2.1.

- 이 중 자산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3만 9,861사(96.7%)로 나타났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[표 2]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분포: 2023년말 기준

(단위: 사)

자산규모	1백억 미만	1백억~ 2백억	2백억~ 5백억	5백억~ 1천억	1천억~ 5천억	5천억 이상	계
기업수	2,818	12,363	13,950	5,817	4,913	1,351	41,212

자료: 「'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」, 금융감독원, 2024.2.1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